### 환급신청서 작성요령

# 1. 서식의 구성

- 환급신청서는 갑, 을, 병, 정지로 되어있음
  - 환급신청서(갑): 환급신청인과 수출물품의 총환급액의 기재 및 환급을 신청 하는 수출신고건(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에 갈음하는 서류)이 10건 이하일 경우에 그 내역가지 기재할 수 있는 서식
  - 환급신청서(을):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신고건이 10건을 초과할 경우 환급신 청서 (갑)지에 이어서 추가로 기재하는 서식
  - 환급신청서(병):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신고건의 갑, 을지의 수출물품에 대한 소요원자재별로 환급금의 계산근거와 잔량을 기재하는 서식으로 소요량계산 서상 소요원자재별로 란을 구분하여 작성함
  - 환급신청서(정): 수출물품 제조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되는 경우, 발생된 부산물의 내역과 환급신청서(병)지의 계산근거 내역에서 부산물에 대하여 공제된 금액을 기재하여 추후 부산물이 수출 등에 제공되었을 경우 환급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서식. 단, 부산물을 수출 또는 LOCAL 공급하고 환급 등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.

#### 2. 작성방법

O 환급신청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(HSK 10단위)별로 수출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월별, 목적국(EU, 미국, 중국, 기타)로 구분 작성한다.

(다만,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월별, 목적국별 구분 없이 「간이정액환급 률표」고시별로 작성한다.)

#### [ 예시

- 1997.7.1~1997.7.31 까지 동일한 품목번호의 물품을 50건 수출하였을 경우 ※ 50건의 수출에 대하여 1건의 환급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10건씩 5건으로 환급신청서를 따로 작성할 수 있음.
- O 환급신청서는 수출물품의 제조자별로 환급방법(연산품정액, 간이정액, 개별 환급) 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.
- 수출물품의 품목번호가 동일하더라도 수출형태가 다를 경우 수출형태별로

구분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한다.

- O 정액환급(연산품정액, 간이정액) 신청시에는 환급신청서 병지(계산근거) 및 정지(부산물내역)는 작성하지 않는다.
- 부산물이 발생되어 병지(계산근거)에서 부산물비율을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부산물이 전부 내수판매 되고 수출되지 않아 공제하였던 부산물에 대한 세 액의 환급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정지(부산물내역)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.
- 3. 항목별 기재요령
- 가. 환급신청서(갑) 기재요령
- ① 란 : 환급신청인의 주소·상호·성명·신청인부호·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.
  - 수출형태에 따라 환급신청인은 다음과 같다.(구체적인 수출형태별 환급신 청은 별표 1참조)
  - 「관세법」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(법 제4조 제1호) : 수출신고필 증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
  -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(법 제4조 제2호) : 판매자 또는 공사자
  - 「관세법」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「자유 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 체에 대한공급 (법 제4조 제3호): 공급자 또는 제조자
  -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(법 제4조제 4호) : 수출자(공급자) 또는 제조자
  - 신청인 부호 : 환급신청인의 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한다

( 예시

주소 : 서울 금천구 수산1길 150

상호 : 주식회사 대세양행

성명 : 김 수 왕

신청인부호	
대세양행-1-22-1-22-1	
사업자등록번호	
119-81-19141	

- ② 란 : 환급신청을 대행하는 관세사의 상호를 한글 10자 이내로 기재하고 무역통계부호표에서 부여한 관세사 코드를 기재한다. (관세사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기재함)
- ③ 란 : 제출번호는 환급신청서의 접수, 접수된 환급신청서의 전산심사결과 오류통지 및 환급결정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번호로서 신청자가 연도별로

제출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6자리로 기재하되, 여러 건을 동시에 환급신청 하는 경우에 각각 다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종전 제출번호와 중복되어서는 안됨.

# [ 예시

0	0	0	0	0	1
---	---	---	---	---	---

※ 단, 접수된 환급신청서의 환급결정통지 및 환급금지급보류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제출번호란의 맨 앞 칸에 A를 기재하여 환급신청 한다.

# ( 예시

A 0	0	0	0	1
-----	---	---	---	---

- ④ 란 : 수출물품 제조자(수출신고필증 ③란)의 주소·상호·성명·통관고유번호·사 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.
  - 제조자의 통관고유부호 : 관세청장이 부여한 제조자의 통관고유부호(수출 신고필증 ③란에 기재되어 있음)를 기재함.
    - ※ 통관고유부호는 상호(8, 한글 4자리) + 업체유형(1자리) + 설립연도(2자리) + 업체동일구분(1자리) + 본지사구분(2자리) + 체크디지트(1자리)로 구성되어 있으며, 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(「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 등록·관리에 관한 고시」제9조에 따른 부호관리자)으로부터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아 환급신청 해야 함.

# ( 예시

주소 : 서울 금천구 수산1길 150

상호 : 주식회사 대세양행

성명 : 김 수 왕

통관고유부호
대세양행-1-22-1-22-1
사업자등록번호
119-81-19141
-

- ⑤ 란 : 접수번호는 신청자가 환급신청한 건별(제출번호별)로 환급시스템에서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여 환급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해주는 번호로서 환 급신청시 기관부호와 연도만 기재하고 일련번호는 공란으로 두어야 함.
  - 기관부호 : 환급신청하는 세관의 통계부호

• 연 도 : 환급신청하는 해당연도

• 일련번호 : 접수 일련번호(세관에서 접수후 부여)

☞예시

기관부호	연 도	일련번호
010	97	0000001

⑥ 란 : 접수일자는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일자(년,월,일)을 세관에서 접수 후 부여

( 예시

1997 / 01 / 05

- ① 란 : 환급방법별 구분코드(1 : 연산품, 2 : 간이(₩), 3 : 개별, 4 : 자동간이)를 기재한다.
- ⑧ 란 : 결정일자는 환급금 지급 또는 지급보류 결정일자를 환급시스템에서 기 재하므로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함

[[ 예시

1997 / 01 / 05

⑨ 란 : 추가환급 신청하는 경우 추가환급과 관련된 당초 환급건의 접수번호를 기재. 예를들어 010-97-0000001로 환급신청한 건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지 못한 원재료가 있어 추가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함.

( 예시

010	97	0000001
-----	----	---------

⑩ 란 : 환급신청하는 수출물품의 품명 및 규격을 기재하되, 수출물품의 품명 및 규격을 전부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략히 기재할 수 있음.

☞예시 (타이어...)

① 란 : 환급신청하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(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확인서류 에 기재된 것)를 기재한다.

☞ 예시

6 0 0 1 1 0 - 1 0 0 0

② 란 : 연산품정액환급을 신청할 때 동 정액환급율표상 업체별, 품목별로 표 기되어 있는 부호(번호 숫자 2자리)를 기재하며 개별환급신청시에는 소요량 적용방법을 기재한다.

☞예시 : 단위실량 01

⑬ 란 : 환급신청하는 수출형태부호를 기재하며 수출형태코드는 다음과 같다.

☞ 예시 :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유환수출물품 01

- 01 : 「관세법」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유환수출물품(법 제4조 제1호 본문)
- 02 : 유환수출신고 수리물품 중 수입 원상태 수출물품(법 제4조 제1호 본 문)
- 03 : 「관세법」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기업체에 대한 제조·가공 후 공급물품(법 제4조 제3호)
- 04 : 「관세법」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기업체에 대한 수입 원상태 공급물품(법 제4조 제3호)
- 05 : 외국무역선(기)에 선(기)용품으로 제조·가공 후 공급하는 물품(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)
- 06 : 외국무역선9기)에 선(기)용품으로 수입 원상태 공급하는 물품(규칙 제 2조 제4항 제1호)
- 07 :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제조·가공 후 공급하는 물품(규칙 제2조 제4 항 제2호)
- 08 :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수입 원상태 공급하는 물품(규칙 제2조 제4 항 제2호)
- 09 : 박람회 등에 출품물품(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)
- 10 : 해외투자, 건설용역 등의 물품 중 제조·가공 후 반출하는 물품의 수 출(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)
- 11 :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(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)
- 12 : 주한미군에 판매물품(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)
- 13 : 주한외국기관의 공사용품(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)
- 14 : 주한외국기관에 판매하는 국산자동차(규칙 제2조 제2항 제3호)
- 15 :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출자한 자본재(규칙 제2조 제2항 제4호)
- 16 :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낙찰물품(규칙 제2조 제2항 제5호)
- 17 : (삭제)
- 18 : 수출계약을 위해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(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)
- 19 : 수탁가공물품 및 잔존원재료의 수출(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)
- 20 : 외국에서 위탁가공 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제조·가공 후 반출 하는 물품의 수출(규칙 제2조 제1항 제5의2호)

- 21 : 위탁판매를 위한 반출물품(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)
- 22 : 연계무역에 의한 물품의 수출
- 23 : 북한에서의 위탁가공용 반출물품으로서 가공 후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현지판매 및 제3국 수출
- 24 : 전자상거래 수출(법 제4조 제1호)
- 25 : 유환수출신고수리물품 중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 (법 제4조 제1호 본문)
- 26 : 외국에서 위탁가공 할 목적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(규칙 제2조 제1항 제5의2호)
- 27 : 「관세법」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기업체에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(법 제4조 제3호)
- 28 : 외국무역선(기)에 선(기)용품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(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)
- 29 :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(규칙 제2조 제4항 제2호)
- 30 : 현물차관 수출 등 그 밖의 유상수출(법 제4조 제1호 본문)
- 31 :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의 사후정산결과 환급금 지급(환급액>징수액)
- 32 : 해외투자, 건설용역 등의 물품중 수입원상태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(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)
- 33 : 해외투자, 건설용역 등의 물품중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(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)
- 34 : 외국에서 위탁가공 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중 수입원상태로 반출 하는 물품의 수출(규칙 제2조 제1항 제5의2호)
- 35 : 수탁가공물품 수출 후 계약조건과 상이(하자)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(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)
- 36 : 개성공단에서 위탁생산하여 다시 반입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
- 37 :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지역에서 위탁생산하여 다시 반입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
- ④ 란 : 수출금액(FOB)은 환급신청서 갑·을지에 기재한 수출건의 수출금액 총 합계액(FOB)을 기재
- ⑤ 란 : 수출물량은 환급신청서 갑·을지의 수출내역에 기재한 수출건 전부의 총 수출물량을 기재하되, 수출신고필증상의 수량단위와는 관계없이 소요량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 단위로 총물량을 기재한다.

- 수출물량이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수출물 량을 기재하며
- YD로 거래한 직물의 경우, 수출신고필증상의 수량단위가 KG 또는 SM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YD로 거래한 후에는 YD단위로 수출물량을 기재
- ⑩ 란 : 15란의 실제거래단위를 기재한다. (Kg, YD, M/T, ℓ 등)
- ①~② 란 : 환급신청서 병지의 세목별 세액합계를 기재하되, 각 세목별로 원단 위 미만은 절사하고, 합계는 세종별 합계를 더한 금액을 기재한다.
  - ☞예시 병지의 합계세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갑지의 ⑰~⑳란의 기재 예시

세 목	병지 합계세액	갑지 세액
관 세	1,241,551	1,241,550
개별소비세	356,729	356,720
교 육 세	121,311	121,310
계	1,719,591	1,719,580

② 란 : 환급금의 입금을 받고자하는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란으로 계좌번호를 개설한 은행명(지점), 코드번호와 계좌번호를 기재한다.

# ☞예시<u></u>

은 행 명	한국외환은행 본(지점)			
코 드 번 호	010001			
온라인구좌번호	06013174952			

② 란 : 수출신고필증의 목적국 구분에 따라 해당코드를 기재한다.

(EU : EU, US : 미국, CN : 중국, ZZ : 기타)

\* @~h 란 : 을지 기재요령 참조

# 나. 환급신청서(을) (수출신고서내역)

※ 접수번호 : 신청자가 신청한 건별(제출번호별)로 접수완료 후 관세환급 시스템에서 부여하는 번호로서 환급신청시 기관부호 및 연도만 기재하고 일련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.

• 기관부호 : 환급신청받는 세관의 통계부호

• 연 도 : 환급신청연도

• 일련번호 : 일련번호로 7자리를 기재한다.

[조명]

기관부호	연 도	일련번호
010	97	000001

- @ 란: 행번호는 행의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. (0001)
- ⑤~⑥ 란 : 수출신고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번호 및 란번호를 기재한다. 다만,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(적재)확인(신청)서의 경우에는 접수번호와 란번호를 기재한다.

### ( 예시

수 출 신 고 번 호(또는 접수번호)				
⑤ 세관 ⑥ 과 ⓓ 신고번호 ⑥ 란				
010 21 978067001 1				

- ① 란: 수리일자는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수리일자, 물품반입확인서의 경우에는 반입일자, 물품적재확인서의 경우에는 적재일자(환급신청유효기간 계산을 위한 기준일)을 기재한다. (1997/01/05)
- ⑧ 란 : 수출물량은 수출신고건별로 소요량책정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단위의 수출물량을 숫자 10자 이내로 기재한다. 수출물량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물량을 기재할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지재한다. (999999999999)
- (h) 란 : 수출금액은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금액을 원화로 기재한다. 수출 신고필증이외의 경우 거래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에는 신청(공급, 판 매, 적재)일의 수출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한다. 다만, 1999.2.1이전 수출신고수리된 건의 간이정액환급 신청시에는 환 급구분을 '4'로 하여 미화달러로 기재한다.

#### 다. 환급신청서(병) 기재요령(계산근거)

※ 접수번호 : 신청자가 신청한 건별(제출번호별)로 접수완료 후 세관시스템에서 부여하여 주는 번호로서 기관부호 및 연도는 기재하되 일련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.

• 기관부호 : 환급신청받는 세관의 통계부호

• 연 도 : 환급신청연도

• 일련번호 : 일련번호로 7자리를 기재한다.

☞ 예시

기관부호	연 도	일련번호
010	97	0000001

- @ 란 : 행번호는 병지의 행순서대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. (001)
- ⑤ 란 : 원재료구분란은 ⓒ란의 신고(증명)번호가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코드를 기재한다.

<원재료 구분 코드>

- 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인 경우: "00"
- 내수용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인 경우: "01"
-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인 경우: "02"
- 평균세액증명서인 경우: "03"
- 분할증명서인 경우: "04"
- 부산물내역인 경우: "05"

☞예시 :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인 경우 1

- © 란 : 신고(증명)번호 및 란번호는 수출물품의 소요원재료별로 사용한수입신고번호(제증명 발급번호) 및 해당 란번호를 기재하되, 란번호는 숫자 3자리로 기재한다.
- ☞ 예시 :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010-11-858336의 1란에서 환급금을 계산 한 경우

01011855336 001 (기납증번호) (란번호)

- ① 란 : 수입(매입)일자는 ⓒ란의 수입신고필증(증명서)상의 신고수리(매입) 일자를 기재한다. (1997/01/05)
- ② 란 : 사용량은 ②란의 수입신고(증명)번호에서 환급금 계산에 사용한 물량을 기재한다. 사용량이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4자리에서 반 올림하여 소수점 3자리를 기재하되, 업체가 원하는 경우 소수점미만은 절사할 수 있다. (999999999.999)
- ① 란 : 단위는 환급에 사용한 원자재의 소요량을 계산한 단위를 기재한다.

(예 : kg, YD, SM, ℓ, kl 등)

- ® 란 : 원자재단가는 필요시 원화로 기재할 수 있다. (999999999999)
- ⑥ 란 : HS는 수입신고필증(또는 제증명서)에 게기된 품목번호(HSK10단위)를 기재한다. (예 : 5309.19-9000)
- ①~⑩ 란 : 관세, 내국세( ), 교육세, 농특세, 합계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

다.

- 해당란에 기재한 원자재의 사용량에 대한 세액을 원단위까지 기재한다. (소수점 이하는 절사)
- 부산물이 발행되는 원자재는 부산물발생 비율 분을, 지급제한대상 물품 일 경우는 지급제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제하고 실제 환급액을 기재하다.
- \* 사용원자재세액 × (1-공제비율) = 사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금액
- 내국세항목의 괄호안에는 내국세의 세종에 따라 해당코드를 ( )에 기재 하다.

(개별소비세 : 1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: 2, 주세 : 3)

- ① 란 : 조사란(구분, 비율)은 해당 원재료의 지급제한비율 또는 부산물공 제 비율을 기재한다.
  - ○조사란 구분 코드

A : 지급제한

B: 부산물 (부산물내역서 작성)

C: 부산물 (부산물내역서 작성 생략)

[작 성 예]

지급제한 대상 또는 부산물 발행 원자재일 경우 :

- 지급제한비율이 18.57% 일 경우 : A 18.57
- 부산물의 공제비율이 26.12% 일 경우 : B 26.12

#### ( 예시

- 단, 부산물이 전부 내수 판매되고 수출되지 않아 공제하였던 부산물에 대한 세액의 환급이 필요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정지는 작성치 아니함

( 예시

- ⊙~® 란 : 잔량물량 및 잔량세액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.
  - 1997.7.1. 이후 최초환급신청시(기납증신청을 포함하여 최초

사용시)에만 기재하는 란으로 해당 환급신청분까지의 환급 사용량을 공제하고 남은 물량 및 금액을 수입신고필증 란별 로 기재

(99999999999.999)

- 수입신고필증상의 한란에 원자재의 규격이 여러 개일 경우 세액은 현행과 같이 원자재 규격별로 산출하고 물량 및 세 액은 란별 총잔량 및 란별 잔액을 기재
- 1건의 원자재 수입신고필증에 규격이 다른 2건 이상의 원자 재가 있어 1건의 환급신청건에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여러 규격의 원자재가 1건의 수입신고필증번호와 란에서 사용될 때가 있으므로 이 경우 잔량은 환급신청서 병지상 가장 먼저 기재되는 행에 기재하고 그 밖의 행에는 기재를 생략할수 있음.
- 잔량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되, 소수점 이하는 절사할 수 있으며, 잔량세액은 원 미만 절사한다.

#### [작 성 예]

수입신고서에 여러 가지 규격의 원자재가 수입된 경우:

• 환급금은 현행과 같이 산출하되 잔량 및 잔여세액은 란별로 기재해야 함

③ 모델·규격	③ 수 량	관 세	비고
① I.C 6001 1,0007}	3,000개	200,000원	3,000개
¥ 100,000			
② I.C 6002 2,000개	3,000개	200,000원	200,000원
¥ 150,000			

- 환급에 사용되는 원자재가 ① I.C 6001이고 그 사용량이 300개인 경우
  - 환급금산출의 예 200,000 × (¥100,000/¥250,000) × (300개/1,000개) = 24,000원
  - 환급신청서 병지에 다음과 같이 기재
  - @란(사용량) : 300개 / ①란 : 24,000 / @란 : 24,000
  - ⓒ란(잔량) : 2,700개(총수입량 3,000-사용량 300)
  - (p)라(잔여세액) : 176.000(란의 총세액 200.000-사용액 24.000)

# 라. 환급신청서(정) 기재요령(부산물내역)

※ 접수번호 : 신청자가 신청한 건별(제출번호별)로 접수완료 후 환급시스템에서 부여하는 번호이며, 기관부호 및 연도는 기재하되 일련번호는기재하지 아니하다.

• 기관부호 : 환급신청받는 기관의 통계부호

• 연 도 : 환급신청연도

• 일련번호 : 일련번호로 7자리를 기재한다.

#### ( 예시

기관부호	연 도	일련번호
010	97	0000001

총 ( ) 행 : 부산물의 총행수를 기재한다 (2)

ⓐ 란 : 행번호는 행의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숫자 3자리로 기재한다. (001)

\* 부산물발생 경우 수입신고건수 및 부산물품목수(HS)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다.

수입신고건수	부산물 품목수(HS)	부산물발생내역(정)지 작성요령
1건	N건	발생품목별로 정지내역을 나열해서 작성
N건	1건	N건의 수입신고 중 대표 수입신고로만 작성
N건	N건	N건의 수입신고번호 중 대표 수입신고번호에 의거 발생품목별로 정지내역을 나열하여 작성

- ⓑ 란 : 부산물 품명 및 규격은 부산물의 품명 및 해당규격을 기재한다. (Steel Scraps...)
- © 란 : 신고(증명)번호 및 란번호는 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재료의 수입신 고번호 또는 증명번호(환급신청서 병지에 기재되는 번호)와 란번호를 기재한다.

(01244-960023253-A, 02)

- @ 란 : HS는 부산물 품목번호(HSK10단위)를 기재한다. (7204.41-0000)
- ⑥~⑥ 란 : 물량 및 단위는 발생된 부산물의 물량 및 단위를 기재하고 소 수점 넷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되,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기재할 수

있다.

- ⑧~® 란 : 관세, 내국세( ), 교육세, 농특세는 환급신청서 "병"지에서 부 산물의 발생분으로 인해 공제된 세액을 기재한다. (9999999999)
- \* 사용원재료세액 × 공제비율 = 부산물 공제세액
- \* 내국세항목의 괄호 안에는 내국세의 세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.

(개별소비세 : 1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: 2, 주세 : 3)